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

2010. 2.11 제정(마약류관리과-129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저장방법, 주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도난·분실을 방지하고 유통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라 함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마는 의학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정상적인 과정에서 유통되지 않으므로 이 지침에서 제외한다.
2. “사고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것이나, 이 지침에서는 특히 분실 또는 도난된 마약류를 말한다.
3. “지정의약품”이라 함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4. “마약류취급자”라 함은 마약류제조·수입·도매업자 등을 말한다.
5. “운반책임자”라 함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으로 운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운반담당자”라 함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으로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의약품특화운송업체”라 함은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마약류취급자의 의무) ① 마약류취급자는 본인이 마약류 운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거나,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인을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 운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 마약류도매업자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5]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의 공급관리책임자나 운송책임자가 마약류 운반책임자가 된다.

② 마약류취급자는 운반책임자와 운반담당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마약류 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③ 마약류취급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5]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 의약품유통관리기준

4. 공급관리

마. 운송업무

의약품의 운송업무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보관온도의 구분이 필요한 의약품은 운송 중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송 중에 의약품이 파손되거나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의약품이 아닌 물품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품질관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약외품 등은 함께 운송할 수 있다.

(3) 운송 중 의약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지정의약품에 대하여는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마약류취급자가 여러 장소로 마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책임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반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운반담당자가 이를 숙지하고 휴대하도록 하고, 원본은 운반책임자가 있는 사무소에 보관한다.

1. 배송지 : 업무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하도록 배송구역을 미리 구분한다.
2. 수령자 명단 및 연락처 : 신속하고 정확한 운반을 위하여 미리 마약류 수령자를 확인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⑤ 마약류와 (일반)의약품을 동일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두 의약품 간 운반차량 내 보관장소가 다르므로 창고에서 출고 시부터 분리·포장되어야 한다.
- ⑥ 마약류취급자는 운반담당자가 배송하는 의약품이 마약류임을 알고 주의 기울일 수 있도록 거래내역서, 인수·인계서 등에 마약류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4조(운반 업무의 위·수탁) ① 마약류는 마약류취급자가 직접 운반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자가 직접 배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약품특화운송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마약류취급자가 진다.

② 마약류취급자는 자신의 임무를 대신할 적절한 업체를 선별할 책임이 있으며, 운반 위탁자와 수탁자는 마약류 운반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운반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 및 이 지침에 따라 운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운반 수탁자는 운반담당자(필요시, 운반책임자 포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마약류 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3. 운반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자로부터 관계자의 교육에 관한 서류를 받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5조(운반 중 마약류의 저장) ① 운반 중 마약류 보관을 위한 차량 내부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할 수 없도록 할 것(고정·부착 의무)

2. 마약류는 잠금장치(자동잠금장치 포함)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할 것

- ② 차량 내부의 마약류 저장시설은 항상 잘 잠겨진 상태여야 한다.
- ③ 차량 내부의 마약류 저장시설과는 별개로 운반차량의 문은 잠금장치(자동잠금장치 포함)가 있어야 하며, 항상 잘 잠겨진 상태여야 한다.
- ④ 운반차량의 문, 마약류 저장시설을 자주 여닫아야 하는 경우, 운반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저장시설은 자동 폐쇄, 자동 잠금장치여야 한다.
- ⑤ 운반차량의 문, 마약류 저장시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에 대해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운반담당자의 임무) ① 운반담당자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시건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한다.

- ② 운반담당자가 약국 등으로 의약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잠시 차량을 떠나는 경우에도 반드시 운반차량의 문, 마약류 저장시설을 시건한다.
- ③ 운반담당자는 수령자와 함께 품목,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령자에게 직접 인계한다. 수령자가 없음에도 마약류를 놓아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부탁하지 않는다.
- ④ 당일 근무가 마감될 때까지 마약류를 운반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운반담당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 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7조(마약류의 반품)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를 포함)가 구매한 마약류를 판매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

도 동 지침 제4조제1항을 준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직접 운반하거나 의약품특화운송업체에 업무를 위탁한다.

제8조(사고마약류의 발생) ① 도난·분실의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그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수사기관의 서류(도난신고 접수증)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한다.

② 의약품특화운송업체에서 운송 중 도난·분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마약류취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여러 보고 단계를 거치면서 법정 보고기한이 지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③ 마약류취급자는 자체적으로 도난·분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마약류취급자는 운반완료(수령자의 수령확인)전까지 도난·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

제9조(지도·감독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도난·분실 등이 발생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동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